2001. 11.

條例案審査報告書

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 례 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2001. 11.17	11.17	11.22	11.22	환경미화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 처리에 따른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한 기준을 신설 ("별첨"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현행조례 내용은 "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·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"로 명시되어 있음.

○ 제6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재의요구된 조례의 내용은 "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 용기를

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"로 개정하였음.

○ 충청북도에서 재의요구한 내용은 "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"로 규함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(수수료)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하였음.

○ 이에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65회 임시회에서 표결한 결과 부결되어 금회 임시회의시 상정한 조례 개정의 내용은 현행 조례 제11조 제3항의 "자치단체의 장이"를 "시장이"로만 개정하였음.

○ 그러므로 현행 제11조 제3항,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재의요구한 제11조 제3항, 금회 임시회의에 개정 상정한 제11조 제3항이 모두 충청북도에서 재의요구한 내용과 대치해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(수수료)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별반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▶**질의** : 현재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의 사용시 부담액은?
○답변 : 1가구당 월 1,000원 중 시와 주민이 50%씩 부담함.

▶**질의** : 제11조 제3항 "자치단체의 장"을 "시장"으로만 개정하는 것은 얼마전 도의 재의요구된 사항과 다를바 없다고 판단되는데?
○답변 : 재의요구 사항은 수거업자와 주민과 계약하는 문제로 재의요구 되었으며, 이것과는 무관한 내용임.

▶**질의** : 제11조 제3항의 "별도"란?
○답변 : 제2항의 "[별표2]"를 말함.

▶질의 : 현재 해당되는 가구의 수는?
○답변 : 30개 아파트 19,150 세대.

▶질의 : 향후 운영시 운반경로는?
○답변 : 달천동 제방 쪽으로 운반함이 안전하다고 생각됨.

4. 심사결과 : 수정의결(별지)

6. 붙 임

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

[별지]

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.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.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중 제11조 제1항중 "월간 배출량은[별표2]의 산출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"를 "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중 "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"를 "시장이 [별표2]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"로 수정한다.

<수정안대비표>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,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<u>월간 배출량은 [별표2]의 산출근거에 따라 정할 수 있다.</u>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·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<u>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	제11조(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- <u>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.</u> ③- <u>시장이 [별표2]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.</u>